

의안번호	제 161 호
의결년월일	1997. 5. 20.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의자	이종식 의원외3인
제출 년월일	1997. 5. 20 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

위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
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안건 1부. 끝.

발 의 자 : 이

홍익현

(찬 성 의 원 서 명 : 붙임 참조)

◇ 제 안 설 명

○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제63회 보은군 임시회에서 심의할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.

-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, 사회 복지행정 및 개발행정,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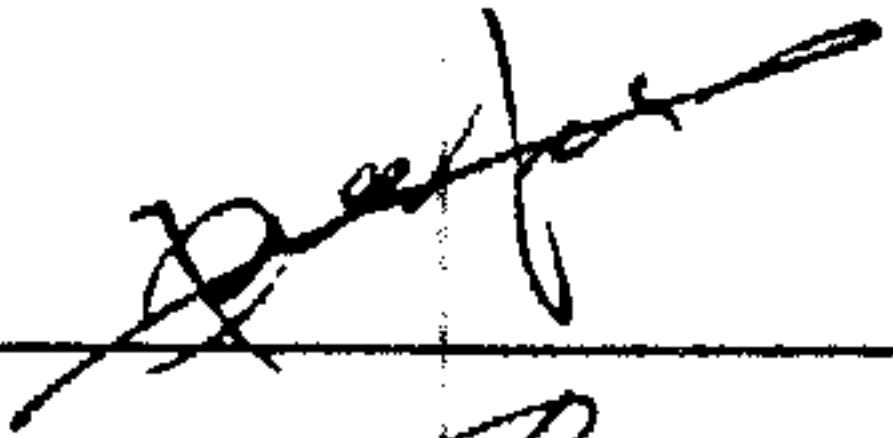
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

위원장 : 조강천 의원

간 사 : 송순상 의원

구 분	담 당 실 과	소위원회 위원장	위 원
일반행정분야 (제1소위원회)	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 무 과 재 무 과 지 적 과 민반위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	박 병 수	유 병 국 송 순 상 류 정 은
사회복지행정분야 및 개발행정분야 (제2소위원회)	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 건 소 환경사업소 경 제 과 건 설 과 지역개발과	김 인 수	방 창 우 박 홍 식
산업행정분야 (제3소위원회)	농 정 과 산 업 과 산 림 과 지 도 소	이 홍 식	조 강 천 유 성 태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조강현		
유병태		
김경우	